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한회사 설립 시 출자납입 증빙 강화〉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12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15.
3. 회 부 일 : 2025. 10.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이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는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을 첨부하여도 족함.

그렇기에 유한회사 설립 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유한회사 설립이 지나치게 쉬워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유한회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체계의 균형을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8조제3항 및 제548조제3항).

Ⅲ. 검토의견

□ 현행 「상법」 및 「상업등기규칙」은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자본충실원칙 준수를 위하여 설립등기 신청 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설립은 「상법」 제295조제1항¹⁾에 따라, 모집설립은 제305조제1항²⁾에 따라 각각 주금의 납입이 이루어지며, 그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제318조제1항³⁾).

○ 또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18조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호 단서).⁴⁾

1)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상법」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3)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한편,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하고,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 (「상법」 제548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56조제2호).⁵⁾

□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 전액의 납입에 관한 증빙으로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을 제출할 수 있어⁶⁾ 실제 자본금의 납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채 회사가 설립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한회사의 금전출자에 관한 납입 증빙 방법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유한회사 설립 시 출자납입 증빙의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확보하고 회사 제도의 악용⁷⁾을 방지하

4)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받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받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5) 「상법」 제548조(출자의 납입) ①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56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6)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연구’ 제8권, 2020. 9., p.267

7) 수원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단6747 판결

려는 취지로 보임.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① 현재 「상업등기규칙」으로 규율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 시 납입금 보관증명서 제출의무를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②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같이 설립등기 신청 시 납입의 증빙을 위하여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② (생략)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납입의 증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피고인은 B, Y와 공모하여 사실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5.경 자본금 3,000만 원을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C’의 설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유통시킬 계획이었고,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Y와 공모하여 자본금의 납입 없이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B, Y, Z, AA, C, D,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현행	개정안
<u>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u> 第548條(出資의 納入) ①・② (생략) <u><신 설></u>	<u>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u> 第548條(出資의 納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49조제1항에 따라 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납입의 증빙을 위하여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개정안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에 관한 사항을 「상법」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인데, 「상업등기법」⁸⁾은 등기신청 시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업등기규칙」에서 해당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법」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 및 현행 상업등기 법령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8) 「상업등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유한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확보하여 유한회사 설립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회사 유형별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에 관한 내용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회사 설립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 악용 사례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규정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5